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가. 생활케어프리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나. 재무케어프리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다.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 연금저축손해보험
라. 자동차케어프리 : 자동차보험 / 개인용자동차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

3. 보험종목의 세목 (이하「세목」이라 함.)

생활케어프리	재무케어프리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자동차케어프리
보장성	저축성	연금저축	개인용자동차

4.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라. 동산
마. 개인용자동차(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
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피보험이익
사. 자동차에 관련하여 생기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관한 피보험 이익

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5-1) 생활케어프리

가.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0/15/20/25/30/35/ 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 납입기간, 7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나. 질병사망보장 특약,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10년만기	전기납	15세 ~ 39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전기납	15세 ~ 29세	
50세만기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10/15/20/25/30/35/ 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 - 납입기간, 70)세	

주) 50세만기의 경우 최대 35년납, 60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다. 질병사망보장 추가특약,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10년만기	전기납	15세 ~ 39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전기납	15세 ~ 29세	
50세만기~ 80세만기	10/15/20/25/30/35/ 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 - 납입기간, 70)세	

주) 50~54세만기의 경우 최대 35년납, 55~59세만기의 경우 최대 40년납, 60~64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라. 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일반상해일반후유장해보장 특약,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일반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 일반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 질병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 질병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질병일반후유장해보장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10년만기	전기납	15세 ~ 39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전기납	15세 ~ 29세	
50세만기 60세만기 70세만기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0/15/20/25/30/35/ 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 - 납입기간, 70)세	

주) 50세만기의 경우 최대 35년납, 60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마.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약,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10년만기	전기납	15세 ~ 39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전기납	15세 ~ 29세	
50세만기 ~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0/15/20/25/30/35/ 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 - 납입기간, 70)세	

주) 50~54세만기의 경우 최대 35년납, 55~59세만기의 경우 최대 40년납, 60~64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바.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약[주1)], 업무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약,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약,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보장 특약, 교통상해 8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주1)], 교통상해 50%이상후유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주1)],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약, 골절 수술비보장 특약,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약,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약, 화상 진단비보장 특약, 화상수술비보장 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보장 특약, 상해수술비보장 특약, 강력범죄피해(일상생활중)보장 특약, 질병특정고도장해 재활자금보장 특약, 암진단비보장 특약, 암진단비(Ⅱ)보장 특약,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 뇌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약,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보장 특약, 양성뇌종양진단비보장 특약,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암입원일당보장 특약,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암수술비(Ⅱ)보장 특약,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약, 7대질병수술비보장 특약,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보장 특약, 깁스치료비보장 특약, 여성골다공증수술비보장 특약, 벌금보장 특약[주2)],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보장 특약[주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약[주2)],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약[주2)], 자

동차사고 성형수술비보장 특약[주2],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보장 특약[주2],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약,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약, 암케어[암진단비]보장 특약, 암케어[암검진서비스지원금]보장 특약,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60세만기	10/15/20/25/30/35/40/45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5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70세만기	10/15/20/25/30/35/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60)세	
80세만기 90세만기 100세만기	10/15/20/25/30/35/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70)세	

주1) 해당 특약은 운전자형과 비운전자형으로 구성되며, 운전자형의 경우 만18세이상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주2) 해당 특약은 만18세이상 자가용운전자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주3) 60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사.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보장 특약,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보장 특약, 암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과로사관련특정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말기폐질환진단비보장 특약, 말기간경화진단비보장 특약, 충수염수술비보장 특약,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컴퓨터과잉질환(VDT증후군)수술비보장 특약, 5대장기이식수술비보장 특약, 각막이식수술비보장 특약, 인공관절수술비보장 특약, 유방절제수술비보장 특약, 18대질병수술비보장 특약, 암케어[암사망]보장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60세만기	10/15/20/25/30/35/40/45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5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70세만기	10/15/20/25/30/35/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60)세	
80세만기	10/15/20/25/30/35/40/45/50년납	15세 ~ Min(보험만기연령-납입기간, 70)세	

주3) 60세만기의 경우 최대 45년납까지만 운영

아.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

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수술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신규	3년만기	전기납	15세 ~ 7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	3년만기		18세 ~ (갱신종료보험나이 - 보험기간)세	
	1년~2년만기		(갱신종료보험나이 - 보험기간)세	

주) 갱신종료보험나이는「12.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참조

자.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Ⅱ)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신규	3년만기	전기납	35세 ~ 7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	3년만기		38세 ~ (갱신종료보험나이-보험기간)세	
	1년~2년만기		(갱신종료보험나이-보험기간)세	

주) 갱신종료보험나이는「12.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참조

차. 갱신형 이차암진단비보장 특약

구분	보험기간[주1)]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신규	3년만기	전기납	15세 ~ min(갱신종료보험나이-5, 7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	3년만기	전기납	18세 ~ (갱신종료보험나이-5)세	
	4년만기	3년납	(갱신종료보험나이-보험기간)세	
	3년만기	2년납		
	2년만기	1년납		

주1) 이차암진단비는 일차암으로 진단확정 후 이차암보장개시일로 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해 보장함.

주2) 갱신종료보험나이는「12.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참조

카.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 나이	보장내용 변경주기 (자동갱신 적용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표준형/ 선택형	최초	신규	1년만기	전기납	15세 ~ 70세	최대 15년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갱신			16세 ~ 84세		
	재가입	신규			16세 ~ 99세		
		갱신			17세 ~ 99세		

주1) 재가입시 보험가입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잔여기간이 15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내용 변경주기로 함

주2) 갱신종료보험나이는 「12.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참조

타. 홀인원비용보장 특약, 알바트로스비용보장 특약,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보장 특약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보험료납입주기
10년만기	10년납	15세 ~ 70세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10/15/20년납		

5-2) 재무케어프리

가. 1형(신규고객 일반형), 3형(기존고객 일반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 가입나이
기본계약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15년만기	5~15년납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15 ~ (100 - 보험기간)세

주)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수시납

나. 2형(신규고객 일부일시납형),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 가입나이
비일시납부분 기본계약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15년만기	5~15년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5 ~ (100 - 보험기간)세
일시납부분 기본계약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15년만기	일시납	일시납	

주)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수시납

5-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가. 연금개시나이 : 55세 ~ 75세

나. 보험료납입기간 : 5년, 10 ~ 30년납, 전기납

다. 연금지급기간 : 5/10/15/20/25 년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 보험가입나이 50세이하

연금개시시점	연금지급기간
55세~59세	10년, 15년, 20년, 25년
60세이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주) 만나이 기준

(2) 보험가입나이 51세이상

연금개시시점	연금지급기간
가입후 경과기간 5년~9년	10년, 15년, 20년, 25년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상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주) 만나이 기준

라. 보험기간

① 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② 선택계약

(신주말 일반상해후유장해보장 특약, 신주말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연금지급종료일까지

마. 납입주기

①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② 추가납입보험료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수시납

바. 보험가입나이

① 5년, 10~30년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② 전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31)세

단, 신주말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약은 가입나이가 15세이상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5-4) 자동차케어프리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 가입나이	가입대상
1년만기	1년납	일시납, 2회분납, 2~6회 연속/ 11회연속 자동이체납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동차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7.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7-1) 생활케어프리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함.
(기본보험료는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험료로 구성됨)

7-2) 재무케어프리

가. 1형(신규고객 일반형), 3형(기존고객 일반형)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일시납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를 말함.
(기본보험료는 기본계약 보장보험료 및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함.

㉡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배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만,「17.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중도인출금을 재납입 하는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2형(신규고객 일부일시납형),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납입한 일시납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이하「일시납부분 기본보험료」라 함.) 및 매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이하「비일시납부분 기본보험료」라 함.)를 말함.

㉠ 일시납부분 기본보험료는 기본계약 일시납부분 보장보험료 및 일시납부분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 비일시납부분 기본보험료는 기본계약 비일시납부분 보장보험료 및 비일시납부분 적립보험료로 구성됨.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함.

㉡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배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다만,「17.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중도인출금을 재납입 하는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7-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매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계약 기본보험료는 연간 1,800만원 이내로 함.
단, 최저보증이율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기본계약 기본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함.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미 납입한 기본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배에서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③ 위 ①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금융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약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함.

7-4) 자동차케어프리

자동차케어프리 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또는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 보험료 납입주기 계약해당일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함.

8. 연계가입 특약에 관한 사항

가. 연계가입의 정의

①「연계가입」이라 함은 아래 ㉠내지 ㉢에서 정한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04(이하「케어프리보험」이라 함)의 서로 다른 세목을 아래 ② 에 따라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를 말함.

㉠ 케어프리보험 생활케어프리(이하「생활케어프리」라 함)
㉡ 케어프리보험 재무케어프리(이하「재무케어프리」라 함)
㉢ 케어프리보험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이하「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라 함)

② 연계가입은 연계가입시 또는 연계가입 이후에도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각 세목의 계약자가 동일할 것
㉡ 각 세목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할 것

③ 동일한 세목을 2개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1개의 세목에 한하여 위 ①의 연계가입을 적용하며, 이 경우 최초로 가입한 1개의 세목을 기준으로 적용함.

④ 연계가입 이후 새로운 세목을 가입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그 새로운 세목을 이미 연계가입 되어있는 세목들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③을 다시 적용함.

⑤ 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에 따라 케어프리보험의 기초서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회사는 변경된 케어프리보험을 포함하여 위 ①내지 ④를 적용함.

나. 연계가입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가. 연계가입 정의」에서 정한 세목을 추가, 삭제, 분리 또는 통합할 수 있음.

다.「나. 연계가입의 변경」에 따라「가. 연계가입 정의」에서 정한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세목에 대한 연계가입 특약의 효력은 상실됨.

라. 연계가입 계약서류 통합제공

① 케어프리보험의 서로 다른 세목을 동시에 연계가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아래의 ㉠ 및 ㉡의 조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서류」,「청약서(알릴의무 포함)」및「상품설명서」에 대하여 각각의 세목을 통합하여 자필서명이 가능함.

㉠ 각 세목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할 것
㉡ 각 세목의 지정대리청구인이 동일할 것

② 위 ①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통합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제공하고, 계약을 승낙한 때에는「통합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제공함.

9.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관한 사항

가. 적용 요건

재무케어프리를 포함하여「8. 연계가입 특약에 관한 사항」「가. 연계가입 정의」①에서 정한 케어프리보험의 서로 다른 세목을「8. 연계가입 특약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계가입하거나, 자동차케어프리를 함께 가입한 경우 적용함. 다만, 자동차케어프리의 경우 재무케어프리 계약자가 자동차케어프리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자동차케어프리의 동일한 세목을 2개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1개의 세목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최초로 가입한 1개의 세목을 기준으로 적용함.

나.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

① 계약자는「가. 적용 요건」에 따른 생활케어프리, 재무케어프리,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또는 자동차케어프리 각 세목별 보험료의 중도인출 납입(이하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이라 함)을 각 세목별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음.

② 위 ①에 따라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을 신청한 경우「17.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17-2) 재무케어프리 가.의 중도인출을 통해 아래 ③에서 정한 중도인출 납입보험료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이하「중도인출 납입일」이라 함)에 중도인출 납입 함.

③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시 중도인출 납입보험료는 생활케어프리, 재무케어프리, 은퇴케어프리의 경우「7.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각 세목별 기본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부가보험료의 일부로서 보험료의 수금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자동차케어프리의 경우 「7.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자동차케어프리 보험료 중 분할납입보험료를 말함.

④ 위 ①에 따른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이 재무케어프리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부족으로 일부 세목만 중도인출 납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순서에 의해 납입함. 다만 하위순서 세목이 상위순서 세목보다 연계납입보험료가 작아, 상위순서 세목은 중도인출 납입이 불가능하나 하위순서 세목은 중도인출 납입이 가능한 경우, 하위순서 세목 연계 납입보험료를 우선 중도인출 납입함.

- 재무케어프리
- 자동차케어프리
- 생활케어프리
-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⑤ 회사는 위 ④에 따라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30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함.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 기간은 각 세목별 최초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⑦ 단, 위 ①내지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17.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17-2) 재무케어프리」라.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연계보험

료 중도인출 납입은 신청할 수 없음.

⑧ 위 ①내지 ④에 따라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을 통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10. 보험료 차등 적용(할인)에 관한 사항」 가. 및 나.에서 정한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함.

10. 보험료 차등 적용(할인)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계약자가 생활케어프리를 가입하고, 아래의 ① 내지 ④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할인을 적용함.

① 재무케어프리 또는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를「8. 연계가입 특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연계가입기준에 따라 연계가입하거나,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케어프리를 가입한 경우

: 연계가입 세목의 계약자 또는 생활케어프리를 가입한 계약자가 자동차케어프리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경우

② 각각의 세목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9.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관한 사항」의「나.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따라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④ 생활케어프리, 재무케어프리(2형(신규고객 일부일시납형) 및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의 경우 비일시납부분) 및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기본계약 보험료 납입주기가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또는 연납에 해당하는 경우

나. 회사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범위내에서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할인을 적용함.

① 할인율의 결정, 할인대상 및 적용방법

㉠ 계약자가 가입한 세목 중 위 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세목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결정함

2세목 가입	3세목 가입	4세목 가입
0.5%	1.0%	1.5%

㉡ 자동차케어프리를 제외한 위 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세목 각각에 대하여 ㉠에 따라 정한 할인율을 납입보험료에 곱한 금액을 할인함. (단, 추가납입보험료 및 일시납 또는 재무케어프리 2형(신규고객

일부일시납형) 및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의 일시납부분 보험료 제외)

② 할인율 적용시점

㉠ 위 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납입하는 각 세목별 납입보험료에 적용함.

㉡「8. 연계가입 특약에 관한 사항」의「나. 연계가입의 변경」에 따라 위 가.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 대상세목이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위 ①에 정한 바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후, 부활(효력회복)하여 위 가.에서 정한 조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에는 그 시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할인율을 새로이 적용함.

11. 적립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11-1) 생활케어프리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보장성보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1-2) 재무케어프리,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한 저축성보험 기준(최저보증이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1-3) 자동차케어프리

해당사항 없음

12. 자동갱신 특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생활케어프리에 한함)

가. 자동갱신 적용대상 및 갱신주기

갱신종료 보험나이	적용대상	보험기간	갱신주기
60/70/80/90/100세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1~3년[주1)] 만기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3년 마다 계약해당일

갱신종료 보험나이	적용대상	보험 기간	갱신주기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수술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80/90/100세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Ⅱ)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약		
60/70/80세	·갱신형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특약		
60/70/ 80/90/100세	·갱신형 이차암진단비보장 특약	2~4년[주2)] 만기	피보험자별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잔여기간이 5년미만인 계약해당일
(기본계약 보험가입나이 + 15)세[주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1년만기	피보험자별 가입시점부터 매1년 마다 계약해당일

주1) 보험기간 1년, 2년의 경우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의 잔여기간

주2) 보험기간 2년~4년의 경우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의 잔여기간

주3) 신규 또는 재가입시 기본계약 보험종료나이까지의 잔여기간이 15년미만일 경우에는 기본계약 보험종료나이를 갱신종료보험나이로 합니다.

나.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다.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의료비 및 장기요양관련 특약(갱신형 실손

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Ⅰ)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Ⅱ)보장 특약,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Ⅲ)보장 특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적용함.

②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간병인지원관련 특약(갱신형 간병인지원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하며, 간병인 지원비용 재산정 및 간병인 위험률 재산출 등으로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③ 회사는 의료비 및 장기요양관련특약, 간병인지원관련 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함.

【의료비 및 장기요양관련특약, 간병인지원관련 특약을 제외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졸중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암입원일당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수술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약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특정전염병치료비보장 특약
·갱신형 이차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1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생활케어프리에 한함)

①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② 이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특약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

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 가능.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봄. 다만,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4.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14-1) 생활케어프리

가. 이 보험의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보장]공시이율로 함.

나.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말일(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의 평일로 한다) 이전에 산출하며, 그 익월에 한하여 적용함.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조정이율을 감안하여 [보장]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보장]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함.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α)

주) $\alpha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A)’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수입보험료(C)’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함.(단, 원수보험료는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포함한 영업보험료로 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① 운용자산이익률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운용자산수익률」및「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주)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②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주1)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3년,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주2) 국고채 가중치(β1) = a / (a+b+c+d)
회사채 가중치(β2) = b / (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주3) 외부지표 공시기간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

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라. [보장]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25%로 함.
마.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바. 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보장]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함.
사. 세부적인 [보장]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름.

14-2) 재무케어프리

가. 이 보험의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저축]공시이율로 함.
나. [저축]공시이율은 매월 말일(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의 평일로 한다) 이전에 산출함.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조정이율을 감안하여 [저축]공시이율을 결정하며, [저축]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함.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α)

주) $\alpha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A)’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수입보험료(C)’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함.(단, 원수보험료는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포함한 영업보험료로 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① 운용자산이익률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운용자산수익률」및「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

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주)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②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주1)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3년,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주2) 국고채 가중치(β1) = a / (a+b+c+d)
회사채 가중치(β2) = b / (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주3) 외부지표 공시기간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라. [저축]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7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가입후 경과기간이 10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복리 1.25%로 함.

마. [저축]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바. 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저축]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함.

사. 세부적인 [저축]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저축]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름.

14-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가. 이 보험의 기본계약 적립부분의 적립이율은 [무배당 연금]공시이율로 함.

나.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은 매월 말일(다만,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의 평일로 한다) 이전에 산출하며, 그 익월에 한하여 적용함.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조정이율을 감안하여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을 결정하며,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 범위 내에서 정함.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와 기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공시기준이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α + 운용자산이익률 × (1-α)

주) $\alpha = \frac{A/B + C}{A + 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함.

•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A)’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B)’, ‘직전년도 수입보험료(C)’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함. (단, 무배당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의 최초판매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 또는 무배당 연금 특별계정 운용자산이 1,000억원이 되는 해당월까지는 유배당 연금 특별계정으로 산출한다.)

•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함.(단, 원수보험료는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를 포함한 영업보험료로 함)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함.

① 운용자산이익률은「운용자산수익률」에서「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하며,「운용자산수익률」및「투자지출률」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운용자산수익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 투자지출률(%) =

$$\frac{(2\times \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times 100}{\{\text{전년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전월말 현재운용자산}-(\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text{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

주)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함.

② 외부지표금리수익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 외부지표금리수익률(%)
= 국고채(5년) 수익률 × 국고채 가중치(β1)
+ 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 회사채 가중치(β2)
+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주1)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3년,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함.

주2) 국고채 가중치(β1) = a / (a+b+c+d)
회사채 가중치(β2) = b / (a+b+c+d)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3) = c / (a+b+c+d)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4) = d / (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주3) 외부지표 공시기간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음.

라.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5년 이하인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75%, 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초과 15년 이하인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 가입후 경과기간이 15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25%로 함.

마.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바. 회사는 사업년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연1회이상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의 변경내역을 통지함.

사. 세부적인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의 운영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무배당 연금]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따름.

14-4) 자동차케어프리

해당사항 없음

15.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15-1) 생활케어프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함.

15-2) 재무케어프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함.

15-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이 보험의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함.

15-4) 자동차케어프리

해당사항 없음.

16. 선납보험료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7.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17-1) 생활케어프리

계약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음.

17-2) 재무케어프리

가. 계약자는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유효한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는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음. 단,「9.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계보험료가 중도인출 납입되는 경우 보험연도 기준 중도인출 회수는 연12회를 초과할 수 있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가능함.

라.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분할지급을 요청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의 계약 해당일(계약일로부터 1월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 해당일을 말함. 이하「분할지급 개시일」이라 함.)부터 만기까지의 잔여기간동안 매년 분할지급일(분할지급 개시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을 말함. 이하「분할지급일」이라 함.)에 지급하여 드림. 다만, 계약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리며, 만기 직전의 분할지급일에서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만기 계약 해당일까지 지급하여 드림. 이 경우 만기 계약 해당일 이후의 분할지급금액은 만기환급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드림.

마. 라.에 따라 지급하는 분할지급금액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및「9.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계보험료가 중도인출 납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에서 만기시점 기준 총납입보험료에 10%, 30%, 50%, 70%, 100% 중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시점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만기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14.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이 계약의 분할지급일의 [저축]공시이율로 분할지급일에 분할 계산함.

바. 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로 도래하는 월 계약 해당일부터 지급하여 드림.
① 1형(신규고객 일반형) 및 3형(기존고객 일반형) 일시납 계약의 경우
② 1형(신규고객 일반형) 및 3형(기존고객 일반형) 비일시납 계약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③ 2형(신규고객 일부일시납형),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 계약 비일시납부분 기본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마.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에서 정한 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아. 가. 내지 바.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9. 연계보험료 중도인출 납입에 관한 사항」에 따라 연계보험료가 중도인출 납입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에서 정한 중도인출 및 라. 및 마.에서 정한 분할지급을 할 수 없음.

17-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 자동차케어프리

해당사항 없음

18. 부가서비스에 관한 사항 (생활케어프리에 한함)

가. 부가서비스의 종류
① 휘트니스센터서비스

② 골프서비스
③ 컨시어지서비스
④ 상조할인서비스

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생활케어프리에 가입하고, 서비스 이용시점을 기준으로 생활케어프리 보험계약이 정상 유지중이며,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대상에 한하여 제공함.
①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② 회사가 정한 서비스 부가 기준을 충족

다. 부가서비스 제공기간
부가서비스는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제공되며, 연장 제공될 수 있음

라. 부가서비스 주요내용
① 휘트니스센터서비스 : 휘트니스 센터 이용료 할인, 제휴 휘트니스 센터 병행이용 가능 등
② 골프서비스 : 제휴골프장 그린피 할인 서비스 및 온라인 예약 서비스 등
③ 컨시어지서비스 : 정보제공 및 구매/예약 대행 등
④ 상조할인서비스 : 제휴된 상조업체 이용시 할인

마. 위 가.의 부가서비스는 회사와 제휴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은 제휴업체에 귀속됨.

바. 위 가.의 부가서비스는 대외환경의 변화 및 제휴업체와의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제휴업체,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음.

사. 상기 가.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해서 제공함.

19. 암검진서비스 부가에 관한 사항 (생활케어프리에 한함)

가. 이 계약의 암검진서비스 추가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암

검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나. 위 가.에서 제공되는 암검진서비스는 대외환경 등의 변경에 따라 해당 검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검진비용 상당액에 해당하는 다른 검진 등으로 대체함.

다. 암검진서비스 추가특약 및 암케어보장 특약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20.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에 관한 사항 (생활케어프리에 한함)

가.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을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나.에서 정한 간병인 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함. 단,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간병인 사용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나. 간병인 지원비용이라함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금액을 말함.

다. 나.에서 정한 간병인 지원비용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21. 자동차보험 약관변경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시에는 자동차관련 보통약관 및 특약의 내용도 동일하게 변경됨.

22. 기타

가.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여 운용함.

① 보험기간은 80세만기 이내로 함.

② 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원 이내로 함.

③ 만기시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의 범위 이내로 함.

나. 5대골절진단비보장 특약은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5대골절수술비보장 특약은 골절수술비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다. 질병일반후유장해보장 특약은 질병사망보장 특약, 질병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또는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라. 암진단비(Ⅱ)보장 특약 및 갱신형 암진단비(Ⅱ)보장 특약은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또는 암케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마.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 및 갱신형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 특약은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또는 암케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함.

바. 갱신형 이차암진단비보장 특약의 가입은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또는 암케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사. 갱신형 이차암진단비보장 특약의 갱신종료보험나이는 암진단비보장 특약, 암케어[암진단비]보장 특약의 보험기간 또는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의 갱신종료보험나이와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함.

아. 뇌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및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자.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및 갱신형 뇌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차.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및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카.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Ⅰ)보장 특약 및 갱신형 심장질환진단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타. 갱신형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및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파.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및 암수술비(Ⅱ)보장 특약은 동일한 보험가입금액으로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하. 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또는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및 갱신형 질병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또는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약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보장 특약과 중복 가입할 수 없음.

너.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약 및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보장 특약은 중복 가입할 수 없음.

더.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에서 상해통원형, 질병통원형의 경우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은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이하로 운영함.

러. 홀인원비용 및 알바트로스비용의 보험가입금액은 최대 500만원으로 함.

머. 만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가입할 수 없음.

버. 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에 한함)
이 보험은 당해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함.

서. 계약의 이전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에 한함)
① 계약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음.
② 계약자가 ①항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합니다.
③ ①항 및 ②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함.

가)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나)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다)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라)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

마) 다음의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보험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험계약

어.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에 한함)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유배당 연금저축과 별도로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며 운용한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함.

저.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는 다른 유배당 연금저축과 동시에 판매하며,「14.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14-3)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에서 정한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은 동시에 판매한 유배당 연금저축의 적립이율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외부지표금리 또는 운용자산이익률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의 결정상한이 유배당 연금저축의 적립이율의 결정하한 이하로 산출되는 등 [무배당 연금]공시이율을 유배당 연금저축의 적립이율보다 높게 쓸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처.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는 다른 유배당 연금저축과의 상품내용 비교, 해지시 세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함.

커.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는 영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함.

터. 재무케어프리 3형(기존고객 일반형) 또는 4형(기존고객 일부일시납형)의 경우,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당사 장기보험 계약자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함.
①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이 1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의 계약자
②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계약의 계약자

퍼. 갱신형 간병인지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및 갱신형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과 중복 가입할 수 없음.

허. 갱신형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은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 및 갱신형 질병입원일당(1일이상)보장 특약과 중복 가입할 수 없음.

겨.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약은 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일반상해사망보장 특약 보험기간 이내로 가입하여야 함.

녀.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약은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보험기간 이내로 가입하여야 함.

뎌. 질병사망보장 추가특약은 질병사망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질병사망보장 특약 보험기간 이내로 가입하여야 함.

려.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추가특약은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하며,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약 보험기간 이내로 가입하여야 함.

며. 신주말 일반상해사망보장 추가특별약관의 가입은 신주말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의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벼.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갱신형 암수술비(Ⅰ)보장 특약, 암수술비(Ⅱ)보장 특약 및 갱신형 암수술비(Ⅱ)보장 특약은 암진단비보장 특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 특약 또는 암케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특약, 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보장특약은 암진단비보장특약, 갱신형 암진단비보장특약 또는 암케어보장 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 함.

여.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적립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음 (생활케어프리, 재무케어프리에 한함)

져.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기본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음 (연금저축 은퇴케어프리에 한함)